

본회, 해태상사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업체) 전 관련제품 불매운동 벌이기로

홍 보 부

9월 30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의

본회는 지난 9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대(對) 농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사의 이득만을 위해 돼지고기 통조림을 수입한 해태상사(주)의 모든 관련계열 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제반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돈인의 중지와 단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의안 심의에 앞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와 양돈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한백용 전무이사는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본지 40p 게재)을 보고하고, 양돈현안문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과 지난 9월 25일 열린 확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세히 보고했다.

또한, 한 전무는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자유

화에 대한 대책 추진 경과와 축협 돼지계열화 사업에 대한 대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진행된 의안 심의에서 참석자들은 제 1호 의안인 신규지부 설립 승인(안)을 상정시켜 이번에 새로 설립된 경북 영주·영풍지부(지부장: 남창수), 전북 이리·익산지부(지부장: 이정열), 충북 음성지부(지부장: 이상훈) 등 3개 지부의 설립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사회는 최근 업계의 주요 현안문제인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사회는 해태상사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해태상사에 대해 대농민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육가공 공장 건설 등 지난 83년 전라남도 양돈농가와 약속한 내용), 둘째, 대농민 약속을 어기고 돼지고기 통조림을 수입한데 대해 주요 일간지에 대농민 사과광고를 5단 크기 이상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해태상사의 전 계열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농민 약속을 어기고 돼지고기 통조림을 수입한 해태
상사의 관련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2 단계 대책
을 강구기로 결의.**

이에 따라 본회는 전국의 65개 지부에 긴급 공문을 발송, 해태계열 상품의 불매운동에 대한 현수막을 지부별로 3개 이상씩 제작,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 전국에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제2의 해태상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양돈인대회」 때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2 단계 대책을 강구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농민을 기만하는 재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각계에 표시하기로 하고, 전 양돈인의 이름으로 규탄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이사회는 9월 25일 양돈현안문제확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상백)에서 확정한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이를 전국 양돈인의 이름으로 관계당국,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가 확정한 양돈현안문제 대책안은 다음과 같다.

1. 양돈업 허가제도 개선방안

축산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양돈업 허가 상한선을 수출·계열화 생산·종돈업 등을 포함해 모돈 1,000두로 조정(단, 모돈 1,000두 초과업체는 유효기간 1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량 수출토록 조치).

신규 양돈업 허가는 전국적인 양돈동향을 각 시도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가 참여하는 생산조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토록 조치.

2. 양돈업 등록제도 개선방안

축산법을 개정하여 양돈업 등록제도를 전면 폐지토록 건의(축산법 개정전까지는 양돈업 등록 현실화 및 사유두수 확인의 자율화 조치).

3. 종돈업 등록제도 개선방안

종돈업 등록제도는 종돈개량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현실적으로 고쳐 존속(양돈업 허가업자 또는 등록업자가 종돈업을 등록코자 할 경우에는 양돈업 허가 또는 등록규모 내에서 종돈업 등록)하고 종돈업자모임을 별도로 가져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검토함.

이어 이사회는 연동가격제 폐지 건의에 대한 대책을 협의, 축산기업조합 중앙회장의 명의로 건의된 「연동가격제 폐지 → 부위별 가격차등제 실시 요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시기상조이므로 좀더 연구·보완될 때까지 현 제도인 연동가격제의 철저 이행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육판매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달라는 축산기업조합측의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대에 역행함은 물론, 육류제품의 소비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들어 신고제의 존속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긴급 이사회는 이밖에도 양돈업계의 현안에 관해 다각적인 협의를 했다. *